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37 발의연월일: 2024. 7. 1.

발 의 자:양부남·정진욱·정준호

전현희 • 이재관 • 복기왕

안규백 • 서삼석 • 민형배

권향엽 • 전진숙 • 박희승

이성윤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라 함)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가 설립한 치유센터는 광주 본원과 제주 분원이 2024년 7월 1일에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으나, 2024년 운영예산 중 50%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어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논란을 빚고 있음.

이러한 국가시설에 대한 지방비 부담 요구는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제137조에 따른 지방재정 건전운영원

칙에 배치되는 것임.

이에 국가가 설립한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 예산의 출연 또는 보조의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시켜 국가의 재정책임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법률 제 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국가"로, "보조할 수 있다"를 "보조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출연 또는 보조) <u>국가와</u>	제18조(출연 또는 보조) <u>국가</u>
<u>지방자치단체</u> 는 치유센터의 설	
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u>보</u>	
<u>조할 수 있다</u> .	<u>보조하여야 한다.</u>